

비상근무요강

제1조 (목적) 본 요강은 비상시의 본교 자체보안을 위한 교직원의 비상근무태세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편성 및 운용) ① 비상근무는 본교 전교직원을 20개조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1호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4개조씩 근무한다.
 2. 2호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2개조씩 근무한다.
 3. 3호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1개조씩 근무한다.
- ② 조의 운용은 비상근무종류에 관계없이 1조로부터 윤번제로 근무한다.

제3조 (업무소관 및 편성표) ① 비상근무에 관한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하며 비상근무 본부는 총무인사팀으로 한다.

- ② 사무국장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각 소속 부서별로 통지한다. 인사이동 등으로 조편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편성을 정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조편성표는 총무인사팀과 당직실 등 필요한 곳에 비치하여 유사시의 비상소집연락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 (소집)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발령된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라 비상근무 조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자의 임무) ① 비상근무 책임자는 비상근무자중 상위직급자로 하며, 당직 근무자는 비상근무 부책임자가 된다.

- ② 비상근무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및 관할청 중앙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
 2. 비상근무자의 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감독
 3. 비상소집 연락망 점검
 4. 비상사고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관서에 연락하며, 사무처장, 총장, 관할청 중앙당직사령의 순으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소화기기, 기타 비상시 필요한 제기제등의 취급방법의 교육 실시
 6. 기타 비상근무에 필요한 제조치

제6조 (비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자는 비상근무 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사고의 미연방지를 기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적절한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방법, 방호,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 ② 피한 기타 난동자 등의 침투 경계, 점검
- ③ 기타 수명사항

제7조 (근무시간) 비상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① 주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 ② 야간은 18시부터 다음날 9시 30분까지

제8조 (당직근무자) 당직근무자는 비상근무 발령시에도 당직자의 임무를 수행하되 비상근무조

에 자동편입되어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간다.

제9조 (순찰조 편성) 비상근무 책임자는 2인 1조 이상의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2시간마다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등이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기타 지시된 구역 등을 순찰 점검한다.

제10조 (연락과 보고) 비상근무 발령기간중 문서, 지시 등은 전언 통신문 또는 활용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방대 편성) 비상근무 책임자는 비상근무 기간 중 상황에 따라 제2조 및 제7조에 의한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의하여 방화대를 편성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상차량) ① 사무처장은 비상근무기간 중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대기시켜야 한다.

1. 1호 비상근무 발령시는 전차량
2. 2호 및 3호 비상근무 발령시는 최소 1대 이상의 차량
- ② 전항의 차량의 운전원은 비상근무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근무일지) 비상근무 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비상근무일지에 기재하고 사무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 (기타사항) ①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의 제반연습을 위한 연습사항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습사항을 부여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총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직장예비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권자의 명령없이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5조 개정<20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개정 <2013 제5차 교무위원회>)